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5호 2018. 02. 28.(수)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53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
- 사천시 조례 제1454호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8
- 사천시 조례 제145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10
- 사천시 조례 제145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12
- 사천시 조례 제145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사천시 조례 제1458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16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8-29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3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3)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4)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5)

4.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6)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우수기업 선정

**제13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 홍보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7)

##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표창의 수여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8)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보 조례”를 “사천소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보”를 “사천소식지”로 한다.

제2조 중 “시보”를 “사천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하고 “신문형”을 “잡지형”으로 하며, “사천시보라”를 “사천N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3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권, 성 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를 “소식지”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545 호 (9)

제5조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보”를 “소식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된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0)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참·조퇴”를 각각 “지각·조퇴”로 한다.

제2조(「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의 개정)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1)

제3조(「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안전행정부령 제4호)”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6호(13)

제3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사천시 주택조례」) 「사천시 주택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4)

제9조(「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5)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6)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7)

2.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소득기반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을 말한다.
4. “공동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방문객 또는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도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험시설, 캠핑장, 유어장(바다낚시터), 민박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이란 소득기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이란 체험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8. “체험”이란 운영 및 관리자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운영협의회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협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개발사업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서부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개발사업 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19)

-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목적·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 어촌계, 협동조합,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의 법인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0)

**제8조(시설물의 운영 지원)**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대수선 및 증축 등의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사용료 징수 등)**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원가산정 시 소득증대시설 외의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 해당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1. 위탁한 시설물을 시장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시설물을 목적 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 시설물을 재임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시장이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2)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 ①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판매시설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소득증대시설, 체험시설 등 시설물의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인적·물적 피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천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화재보험 등(이하 “시 보험”이라 한다)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 보험에 미리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지서 교부 시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 제한)**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천재지변, 전염병 유행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 제한 권고를 받은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시설물의 토지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용익물건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3)

**제1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4장 이용료

**제18조(이용료 징수 및 관리)** ① 시설물의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위탁사용료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적립비율 또는 적립금액은 위탁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물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 이용일 4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 2. 일부 반환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4)

나.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다.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이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반환은 이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천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사천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장 지도·감독

**제21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이용권
2. 시설물 이용관리대장
3. 시설물 이용에 대한 요금징수 내역
4. 수입/지출 결의서
5. 근무일지
6. 금전출납부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5)

**제22조(위탁시설물의 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관리위탁 협약은 종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6)

[별표 1]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 1. 유어장

#### ○ 바다낚시터

(단위:원)

구 분		연 중	비 고
당일이용	성 인	20,000	
	청 소 년	10,000	

※ 청소년 : 8세 이상 ~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 무료

#### ○ 펜션형 바다낚시터

(단위:원)

위 치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대방 ·	개인	성 인	20,000	20,000	
		청소년	10,000	10,000	
실안 (산분령)	전세	1일/1실 (4인기준/ 최대10인)	220,000	250,000	4명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① 비수기, 성수기 구분

- 비수기 : 1~6월, 9~12월
- 성수기 : 7~8월

#### ②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 3시간 : 20,000원
- 3시간 초과 : 1일 이용료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7)

## 2. 체육시설

### ○ 풋살경기장

(단위:원)

구 분	이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1일	2시간	20,000	25,000	야간 조명 사용시 1만원 추가적용

### ○ 요금할인

가. 사천시민 20%

※ 사천시민 : 사천시 주민등록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

나. 청소년 30%

※ 사천시 소재 초·중·고 재학생 또는 18세 이하 사천시 거주 청소년

※ 사천시 외 거주 청소년은 사천시민 할인을 적용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8)

## 3. 숙박시설

(단위:원)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저도 펜션시설	1박2일, 4인 기준	70,000	100,000	100,000	130,000	A=38.88㎡
일반캠핑	1면/ 14:00 ~ 익일11:00	20,000	25,000	30,000 (7월 ~ 8월)		전기이용료 포함
주차장	경형 (1,000cc 미만)	1,000				
	소형 (1,600cc 미만)	2,000				
	중형이상 (1,600cc 이상)	3,000				
	승합자동차	5,000				

① 평일과 주말, 성수기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7월 ~ 8월(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② 이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③ 퇴실시간 미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

시설구분	1시간 초과 ~ 2시간	2시간 초과 ~ 4시간	4시간 초과
펜 션	20,000	40,000	1일 이용료
캠 핑 장	10,000	20,000	1일 이용료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29)

[별지 제1호서식]

##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 및 단체)		전화번호	
성 명 (대 표 자)	(남, 여)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p>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법인·단체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p> <p>사천시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및 운영규정(자치규약)</p> <p>2. 사업계획서</p>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30)

[별지 제2호서식]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시 설 명 :

위탁운영자 성 명 :

주 소 :

귀하(법인, 단체)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31)

[별지 제3호서식]

##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단위: 원,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율	비고
지 출 원 가	인 건 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소 계(A)			
	경 상 경 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도서인쇄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B)			
	공 과 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소 계(C)			
일반관리비*(D) [(A+B+C) × (    )%]					
이윤**(E) [(A+B+C+D) × (    )%]					
<b>총 지 출(F=A+B+C+D+E)</b>					
수 입 원 가		입장료			
		이용료			
		기타수입			
		<b>총 수 입(G)</b>			
<b>총 원 가(F-G)</b>					

###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32)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294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완전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2. 28.

## 사 천 시 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2. 28. ~ 2018. 03. 14.(14일간)
3. 공고대상 : 출국 외국인 소유차량 14대(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 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사 천 시 공 보

제545호(33)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동법 제80조(벌칙)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대상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비고
1	96부1562	코란도디젤-밴	G*F*I* J*M*S *I*C*N*	2018.02.23	직권등록 (외국인소유자 완전출국)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후속법 적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상태로 완전출국한 외국 인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명 령 조치함.
2	15모7257	쏘나타Ⅲ1.8DOHC	N*U*E* D*Y *A*			
3	69고7235	마티즈	K*A* M*H*M*A* B*L*L			
4	08머1318	티뷰론터볼런스	A*H*R*			
5	12가2305	EF쏘나타	P*A* X*A* C*T			
6	05러5097	트라제XG	L*C*M*A*E *I*A* K*N*S*K* K*M*R*			
7	22루7489	트라제XG				
8	경남37나9274	카렌스베타2.0	H*M*D*O*O*K*R *M*O*			
9	65고1243	옵티마 리갈	P*A* P*U*N* B*N*			
10	52도5936	SM3	P*A* H*N*R*			
11	26더8824	스펙트라	K*R*M*V B*K*O*			
12	14고5335	라세티 1.5D AT	M*M*D*A*O* S*N*A*B*K			
13	17가7359	매그너스2.0DL6-로얄	N*U*E* V*N *U*G			
14	66모7515	SM5	Z*A*G *H*N*O*G			